

GANGJIN 

Web Contents



목차

목차	2
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	3
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	3
금연클리닉 이용안내	3
국가금연상담	3
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	3
흡연 및 음주예방 교육 및 캠페인	4
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	4
공동주택 금연구역(금연아파트) 지정 신청 접수	4
지정절차	4



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


"금연! 가족사랑의 시작입니다."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을 높이고 군민들의 궁극적으로 흡연을 감소시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함.

금연클리닉 이용안내



📍 국가금연상담

- 금연상담전화: 1544-9030
- 이용안내
 - 평일: 09:00 ~ 22:00
 - 공휴일: 09:00 ~ 18:00

 금연클리닉 pdf다운로드

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

- 사업대상: 5인 이상 금연결심자가 있는 강진군 소재 사업장, 군부대, 학교 등

(<http://www.gangjin.go.kr>)

- 신청기간: 연중
 - 이용비용: 무료
 - 운영기간: 사업장마다 주1회 / 5주간
 - 운영내용
 - 금연 및 절주교육 실시
 -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및 폐활량 측정
 -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
- ※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종료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


흡연 및 음주예방 교육 및 캠페인

- 대상: 어린이집, 초·중고, 경로당 및 복지회관
- 내용
 - 어린이 흡연 및 음주예방 뮤지컬, 초중고 순회 흡연 및 음주예방교육
 - 생애주기별 눈높이에 맞는 흡연 및 음주예방교육, 상담
 - 세계금연의 날(5.31) 및 음주예방의 달(11월) 캠페인 전개

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

- 대상: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
 - 근거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, 제9조 제4항~제9항, 제9조의4, 제9조의5
 - 내용
 -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이행상태 점검
 -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
- ※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시 10만원 과태료 부과

공동주택 금연구역(금연아파트) 지정 신청 접수

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 hwp다운로드

- 대상범위: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포함)
 - ※ 공동주택의 복도, 계단,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
- 근거법령: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
- 신청자: 공동주택관리자 및 관계자

지정절차

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등 서류 제출
공동주택 입주세대 1/2 이상 동의 필수



시·군·구 확인
지정동의서, 세대주 명부, 공동주택
도면관련 서류



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
·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
· 흡연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 등

- 행정사항: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

COPYRIGHT © GANGJIN-GUN. ALL RIGHT
RESERVED.

GANGJIN

Web Contents

